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2351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9. 5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## 1. 제안이유

-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경 : 3,000천 원 감
  - (당초) 금4,400천 원 → (변경) 금1,400천 원
- 기부금 수입 변경 : 185,610천 원 감
  - (당초) 금220,000천 원 → (변경) 금34,390천 원
- 기타회계 전입금 신설 : 35,610천 원 증
- 예치금 변경 : 153,000천 원 감
  - (당초) 금224,400천 원 → (변경) 금71,400천 원

## 3. 기금운용계획서(변경안) : 붙임 참조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(※붙임)
- 나.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붙임

## 기금운용계획서(변경안)

### 1. 운 용 총 칙

회계연도 : 2023년

예산차수 : 기금변경3차

회계구분 : 고향사랑기금

#### ① 기금설치 개요

- (1) 설치근거 :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
- (2) 설치목적 :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, 접수된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
- (3) 설치년도 : 2023년

####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- (1) 기금사업의 목표 : 기부금 모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기부자의 답례품 제공, 기부금 활용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 도모
- (2)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 : 기부금 모금, 접수에 따른 답례품 제공, 기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 등

#### ③ 기금조성 및 운용

- (1) 기금조성 현황

○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2022년도 말 조성액 ①	2023년도 조성계획		2023년도 말 조성액 ② = ① + ③	비 고
	수입 ②	지출 ③		
0	71,400	0	71,400	

○ 기금 총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2023년도 말 조성액 ㉑	융자금 미회수채권 ㉒	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㉓	총 조성규모 ㉑=㉒+㉓-㉔
71,400	0	0	71,400

(2) 재원조성 :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으로 조성

(3) 지원기준 :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

(4) 지원대상 :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주민복지증진 사업추진 지원

## 2. 자금운용계획

회계연도 : 2023년  
 예산차수 : 기금변경3차  
 회계구분 : 고향사랑기금

① 자금수지 총괄 (단위:천원)

항 목	수 입		계		확		지	출		계		확
	수입액	기정액	증 감	항 목	지출액	기정액		증 감				
합 계	71,400	224,400	△153,000	합 계	71,400	224,400	△153,000					
전 입 금	35,610	0	35,610	비용 자 성 사 업 비	0	0	0					
보 조 금	0	0	0	비용 자 성 사 업 비	0	0	0					
차 입 금	0	0	0	인 력 운 영 비	0	0	0					
음 자 금 회 수 (이 자 포 함)	0	0	0	기 본 경 비	0	0	0					
예탁금원금회수	0	0	0	예 탁 금	0	0	0					
예치금회수	0	0	0	예 치 금	71,400	224,400	△153,000					
예수금	0	0	0	차입금원리금상환	0	0	0					
이자수입	1,400	4,400	△3,000	예수금원리금상환	0	0	0					
기타수입	34,390	220,000	△185,610	기 타 지 출	0	0	0					

회계연도 : 2023년  
 예산차수 : 기금변경3차  
 회계구분 : 고향사랑기금

② 수입계획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·목	수입액	기정액	증감	산출내역
200 세외수입	35,790	224,400	△188,610	
210 경상적세외수입	1,400	4,400	△3,000	
216 이자수입	1,400	4,400	△3,000	
216-01 공공예금이자수입	1,400	4,400	△3,000	
				○ 공공예금이자수입 경정 1,400,000원 - 기정 4,400,000원 = △3,000
220 임시적세외수입	34,390	220,000	△185,610	
224 기타수입	34,390	220,000	△185,610	
224-03 기부금수입	34,390	220,000	△185,610	
				○ 기부금 수입 경정 34,390,000원 - 기정 220,000,000원 = △185,610
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	35,610	0	35,610	
720 내부거래	35,610	0	35,610	
721 전입금	35,610	0	35,610	
721-03 기타회계전입금	35,610	0	35,610	
				35,609,100원 = 35,610
수입합계	71,400	224,400	△153,000	

회계연도 : 2023년  
 예산차수 : 기금변경3차  
 회계구분 : 고향사랑기금

③ 지출계획

(단위:천원)

조직·부문·정책·단위·세부사업·편성목	지출액	기정 지출액	비교증감
자치행정과	71,400	224,400	△153,000
기타	71,400	224,400	△153,000
재무활동(자치행정과)	71,400	224,400	△153,000
보전지출(고향사랑기금)(고향사랑기금)	71,400	224,400	△153,000
보전지출(고향사랑기금)	71,400	224,400	△153,000
602 예치금	71,400	224,400	△153,000
01 일반예치금	71,400	224,400	△153,000
○ 일반예치금			
경정 71,400,000원 - 기정 224,400,000원 = △153,000			
지 출 합 계	71,400	224,400	△153,000

### 3.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

회계연도 : 2023년  
 예산차수 : 기금변경3차  
 회계구분 : 고향사랑기금

(단위:천원)

연도별	조 성 액						집 행 액						잔액 (㉔-㉖)			
	계 ㉔	전입금	보조금	차입금	용자금회수 (이자포함)	예수금 이자수입	기타수입	계 ㉖	비용자성 사업비	용자성 사업비	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	자입금 인입금		예수금 인입금	기타지출	
2017년 까지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2018년도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2019년도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2020년도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2021년도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2022년도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2023년도	71,400	35,610	0	0	0	0	1,400	34,390	0	0	0	0	0	0	0	71,400
계	71,400	35,610	0	0	0	0	1,400	34,390	0	0	0	0	0	0	0	71,400

#### 4.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

회계연도 : 2023년  
 예산차수 : 기금변경3차  
 회계구분 : 고향사랑기금

(단위:천원)

구분	예치(탁)처	예치 및 예탁액			비고
		2021년도 말현재액	2022년도 말현재액㉔	2023년도 말현재액㉕	
합계		0	0	71,400	71,400
예치금	소계	0	0	71,400	71,400
	농협은행	0	0	71,400	71,400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□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

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(이하 “고향사랑기금”이라 한다)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, 제3항에 따라 모집·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2. 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3.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4.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
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(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)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
제22조(기금 운용계획의 수립)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